【별지 제12-3호 서식】 ※ 사업 특수성에 따라 문구 조정 가능

지식재산권 서약서

사 업 명 :
계약(협약)번호 :

1. 당사는 본 사업의 국방규격 제정・개정(안) 및 관련 기술자료 일체(이하 '국방규격 제정・개정(안) 등')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유사기술이 당사(협력업체 포함) 및 제3자 명의의 지식재산권으로 출원 및 등록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
<기등록된 업체의 지식재산권 존재 시 아래의 문구로 대체>

1. 당사는 본 국방규격 제·개정(안) 및 관련 기술자료 일체(이하 '국방규격 제·개정(안) 등')와 관련하여 아래의 특허 외에는 직접 또는 유사기술이 당사(협력업체 포함) 및 제3자 명의의 지식재산권으로 출원 및 등록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
- 아 래 -

특허 등록번호	
발명의 명칭	

2. 당사는 본 사업의 국방규격 제정·개정(안) 등에 대한 일체의 실시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,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·형사상 일체의 문제 제기에 따른 국가에 손해 발생 시 이를 배상하는 등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.

3. 향후 당사(협력업체 포함)는 본 사업의 국방규격 제정·개정(안) 등에 명시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으로 등록 또는 출원하지 않을 것이며, 이로 인한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.

<개발성과물을 업체가 소유할 경우 아래의 문구로 대체>

3. 향후 당사(협력업체 포함)는 본 사업의 국방규격 제정・개정(안) 등에 명시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으로 등록 또는 출원을 희망할 경우, 국가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등록 또는 출원할 것을 서약합니다.
이때 당사는 군수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와「표준화 업무규정」 별지 제12-1호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, 해당 지식재산권 등록원부에 통상실시권 설정 등록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 . . .

회사명: 확인자: (인)